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동창회 회칙(20141205)

## 제정 및 개정 이력

1. 이 회칙은 197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회칙은 2002년 5월 5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3. 개정된 회칙은 2004년 5월 5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4. 개정된 회칙은 2008년 5월 5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5. 개정된 회칙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6. 개정된 회칙은 2014년 12월 05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이름

이 모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동창회(줄여서 말할 때는 "에너지자원 동창회" 또는 "자원공학과 동창회"라 함)라 하고, 영어로는 Alumni Association of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로 적는다.

### 제 2 조: 목적

이 모임은 회원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며 아울러 모교와 동창회가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국

사무국은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 4 장: 사무국 및 직원"에서 서술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 회원으로 나누고, 각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채광학과, 광산학과, 자원공학과와 에너지자원공학과 졸업생.
- 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생 가운데 이 모임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

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생 가운데 이 모임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

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졸업생 가운데 이 모임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

## 2. 준회원

정회원 자격으로 정한 과정을 중퇴한 사람. 다만, 중퇴한 사람 가운데에서 본인이나 그의 연고자가 희망하면 임원 회의의 결의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3. 특별 회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이에 해당하는 다른 이름을 가진 학과도 포함함)의 교직원(퇴직자를 포함함).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권리

가.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준회원과 특별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 2. 의무

회원은 어떤 형태로든 연회비를 내고 회원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이바지할 의무를 진다.

## 제 3 장: 임원 및 자문 위원

### 제 6 조: 임원 및 자문 위원

이 모임에는 다음의 임원 및 자문위원을 둔다.

회장: 1 명

감사: 2 명

자문 위원: 다수

부회장: 다수, 그 중 한 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간사: 1 명

이사: 다수

### 제 7 조: 임원 및 자문 위원 임기

1.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자문 위원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종신직 자문 위원: 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종신직 자문 위원이 된다.

나. 회장의 기수보다 더 높은 기수의 동기회의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자문 위원이 된다.

다. 임원 회의의 결의가 있고, 자신이 동의한 회원은 위촉직 자문 위원이 되고, 그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임원 회의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임원 및 자문 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자문 위원은 제 7 조의 2 항에 따라 선출되는 것으로 본다.

3.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과 운영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가. 회장의 기부터 그 아래로 동기회가 결성되어 있는 모든 동기회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나. 임원 회의가 추천하고 결의한 회원은 운영 부회장이 된다.

다. 임원 회의가 회장 다음 기의 부회장들 중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결의한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이 된다.

4. 에너지자원공학과와 의학과는 간사가 된다.

5.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운영 이사로 구분한다.

가. 회장의 기부터 그 아래로 동기회가 결성되어 있는 모든 동기회의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나. 임원 회의가 추천하고 결의한 회원은 운영 이사가 된다.

제 9 조: 임원 및 자문 위원이 하는 일

1.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며 동창회의 모든 일을 통할한다.

2. 감사는 수시로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며,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3.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한다. 자문회의의 결과는 자문회의의 의장이 회장에게 통보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일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일을 대신한다.

5. 간사는 동창회와 에너지자원공학과 사이의 협력에 관한 일과 회장이 따로 지정한 동창회 일이 있을 경우 이를 맡아 한다.

6. 이사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간사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맡아 한다.

제 4 장: 사무국 및 직원

제 10 조: 사무국

“제 1 장의 제 3 조: 사무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은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11 조: 직원

1. 모임의 사무를 보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각 1 명, 그리고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총무 1 명을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원이 아닌 총무에게는 급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회의

#### 제 12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 총회는 정기 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원의 요청으로 개최하며 정기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4. 총회에서는 다음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가. 회칙 제정과 개정
  - 나.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승인
  - 다.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 라. 그 밖에 필요한 일

#### 제 13 조: 자문 회의

1. 자문 회의는 자문 위원들로 구성한다.
2. 자문 위원들이 자문 위원들 중에서 1 명의 의장을 선출한다.
3. 회장은 자문 위원이 아닌 임원들 중 1 명 이상을 읍저버로 자문 회의에 파견하여 자문 회의와 동창회 사이의 연락을 맡도록 한다.
4. 회장은 동창회 총무를 자문 회의에 참석케 하여 간사 역할을 하게 한다.
5. 자문 회의는 1 년에 1 차례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
6. 자문 회의는 다음의 일을 한다.
  - 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한다.
  - 나. 동창회 회장이 요청한 문제에 대해 자문한다.
7. 자문 회의의 결과는 자문 회의의 의장이 회장에게 통보한다.

#### 제 14 조: 임원 회의

1. 임원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간사, 이사로 구성하며 1 년에 2 번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감사와 자문 위원은 임원 회의에 읍저버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임원 회의는 다음의 일을 한다.

가. 예산, 결산과 사업 계획의 심의

나.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

다. 회칙 개정안 및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심의

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마. 연회비 또는 이를 대신할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그 밖의 수입금의 결정

바. 그 밖에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것

제 15 조: 운영 위원회

시급한 안건이 생겼을 때, 잠정적인 논의 및 결정을 위하여 회장은 회장, 수석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로 구성되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의 임원 회의에 상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타 회의

총회, 자문 회의, 임원 회의 및 동창회 운영에 관한 것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회장, 부회장은 필요할 때에 임원 또는 회원 중 일부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장

회의의 소집권자는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 18 조: 의결

1. 총회의 경우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30 명이며, 참석자 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다만 회칙을 고치거나, 부동산 매매에는 출석 인원 3 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가결된다.

2. 자문 회의의 경우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5 명이고, 출석 인원의 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3. 임원 회의의 경우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7 명이고, 출석 인원의 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 6 장: 사업

제 19 조: 목적 사업

동창회는 동창회 설립과 동시에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지, 회보와 회원 명부 발간

2. 회원 친목 행사

3. 회원의 경조사 지원

4. 육영 사업과 장학 사업

5. 그 밖에 동창회가 정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20 조: 수익 사업

동창회는 다음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 사업
2. 그 밖의 수익 사업에 관한 것은 임원 회의가 정한다.

## 제 7 장: 재정

### 제 21 조: 자원

동창회의 자원은 연회비 또는 이를 대신할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기부금(또는 찬조금), 사업 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 제 22 조: 연회비 또는 이를 대신할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의 납부

연회비 또는 이를 대신할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등은 매년 12월 말까지 동창회로 낸다. 단, 임원은 정해진 분담금의 납입으로 연회비를 대신한다.

### 제 23 조: 연회비 또는 이를 대신할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평생 회비 등의 책정

연회비 또는 이를 대신할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평생회비 등의 액수는 임원 회의가 정하여, 동창회의 규정으로 한다.

### 제 24 조: 기부금 또는 찬조금

동창회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 25 조: 기부금 영수증

동창회는 기부금 또는 찬조금, 기별 분담금, 임원 분담금 등을 낸 사람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 26 조: 회계 연도

동창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8 장: 포상

### 제 27 조: 포상

동창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임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 제 9 장: 그 밖

### 제 28 조: 그 밖

이 회칙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임원 회의에서 정한다.